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579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3월 30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용호, 김태수,
남창진, 유만희, 이성배,
이원형, 최민규, 허 · 훈,
황철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최근 건축 설계의 다양화로 건축물대장상 1개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형상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된 형태의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 조례는 실제 외형과 상관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기준으로 건물 상단의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을 일괄 제한하고 있어, 구조가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설치 가능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을 예외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된 건물 각 동의 상단 중 2면에 하나의 벽면 이용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총설치 가능 개수를 6개로 제한함(안 제4조제1항제3호가목).
- 나. 동 분리 구조의 세부적 판단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1항제3호가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건물이 형태·규모상 2개 이상의 동(棟)으로 분리된 구조로서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은 각 동의 2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전체에 표시할 수 있는 입체형간판의 총수는 6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시장은 동 분리 구조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 ----- ----- ----- -----, ----- ----- ----- ----- ----- --.
<u>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u>	<u>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건물이 형태·규모상 2개 이상의 동(棟)으로 분리</u>

나.·다. (생략) 4. ~ 9. (생략) ② ~ ④ (생략)	<u>된 구조로서 도시경관을</u> <u>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u> <u>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u> <u>를 거쳐 구청장은 각 동의</u> <u>2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u> <u>을 각각 표시하게 할 수 있</u> <u>다. 이 경우 건물 전체에</u> <u>표시할 수 있는 입체형간</u> <u>판의 총수는 6개를 초과할</u> <u>수 없으며, 필요시 시장은</u> <u>동 분리 구조의 세부적인</u> <u>판단 기준에 관한 가이드</u> <u>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u> 나.·다. (현행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1항제3호가목 조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대장상 1개의 건축물이나 실제 외형상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된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¹⁾를 거쳐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 동 분리 구조의 세부적 판단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²⁾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사로 참석수당과 같은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출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지출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서울시 관련부서(도시경관담당관 등)의 통상적인 행정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함